



제 433국회 (임시회)
제 1 차 정 무 위 원 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부광고 자율심의 제도 근거를 법률로 상향〉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379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양부남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9. 30.
3. 회 부 일 : 2025. 10.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가 광고를 할 경우 명칭, 대표자 성명, 이자율 등 필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는 시정명령이나 벌칙 등 사후적 조치에 국한되어 있음. 이러한 한계로 인해 불법 광고나 허위, 과장된 홍보가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대부업 광고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가 영상광고에 한해 자율심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대상이 제한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피해 예방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이에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방송, 신문,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부업 광고의

신뢰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조의4 신설, 제9조의5 신설
및 제21조제1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함)가 방송, 신문, 현수막, 인터넷 등 법상 열거된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및 제9조의5 신설, 제21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신설>	제9조의4(광고의 자율심의)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 등과 관련한 광고(이하 “대부광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광고가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중 텔레비전방송 및 라디오방송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문 중 일반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u>같은 조 제2호의 인터넷신문</u> <u>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u> <u>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u> <u>목의 잡지</u> 3. 「<u>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u> <u>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u>」 <u>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u> <u>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u> <u>(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u> <u>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u> <u>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u> <u>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u> <u>를 포함한다)되는 것</u> 4. <u>전광판</u> 5.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u> <u>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u> <u>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u> <u>을 포함한다]</u> 6. <u>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u> <u>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광고매체</u> ② <u>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자</u> <u>가 심의받은 광고의 내용을 변경</u> <u>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제1항에</u> <u>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u> <u>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u> <u>하지 아니한다.</u>
--	--

③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협회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대부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협회에 대부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u><신 설></u>	<u>제9조의5(자율심의기구 구성·운영 등) ①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을 위한 조직과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심의에 적용하는 심의기준 등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후 대부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u> <u>③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협회가 수행하는 대부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 <u>④ 협회는 대부광고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u> <u>⑤ 제9조의4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u> <u>⑥ 협회가 제9조의4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심의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u> <u>⑦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	---

	<u>바에 따라 자신이 심의한 대부광 고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u>
<u>제9조의4</u>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등) (생 략)	<u>제9조의6</u>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등) (현행 제9조의4와 같음)
<u>제9조의5</u> (고용 제한 등) (생략)	<u>제9조의7</u> (고용 제한 등) (현행 제9 조의5와 같음)
<u>제9조의6</u>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 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생 략)	<u>제9조의8</u>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 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현 행 제9조의6과 같음)
<u>제9조의7</u>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생략)	<u>제9조의9</u>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현행 제9조의7과 같음)
<u>제9조의8</u> (차별금지) (생략)	<u>제9조의10</u> (차별금지) (현행 제9조의 8과 같음)
<u>제9조의9</u>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 보 보호) (생략)	<u>제9조의11</u>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 보 보호) (현행 제9조의9와 같음)
제19조(벌칙) ① (생략)	제1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제9조의9제1항</u>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과정 또는 대부중 개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 의 개인정보를 정해진 용도 외 의 목적으로 처리한 자	4. <u>제9조의11제1항</u> ----- ----- ----- -----
5. <u>제9조의9제3항</u> 을 위반하여 대	5. <u>제9조의11제3항</u> 을-----

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 전달·유통한 자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 3. (생략) 4. <u>제9조의4제1항</u>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 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 게 대부행위를 한 자 5. <u>제9조의4제3항</u>을 위반하여 대 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 6. ~ 10. (생략) ⑤ (생략)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1. ~ 9. (생략) <u><신설></u>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9조의6제1항</u>----- ----- ----- ----- ----- ----- 5. <u>제9조의6제3항</u>----- ----- 6. ~ 10.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과태료) ① ----- ----- -----. 1. ~ 9. (현행과 같음) 9의2. <u>제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를</u>
---	---

	<u>한 자</u>
10.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자	10. 제9조의7제1항----- ----- ----- -----
10의2. ~ 12. (생략)	10의2. ~ 12.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은 대부업자등이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대부업자등·여신금융기관·대출모집인이 아닌 경우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관련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대부업자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¹⁾.

- 1)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②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대부업 등록번호
 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6.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3. 중개를 통하여 대부를 받을 경우 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6.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

○ 이를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등은 광고 중단명령을 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하여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요청을 할 수 있고²⁾, 광고 관련 규제 위반 시에는 위반자에 대하여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됨³⁾.

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간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이용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토요일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제9조의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3(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등)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부이자율,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거래상대방, 대부중개를 통하여 대부할 대부업자, 그 밖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내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
 - 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
 - 다.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방법
2.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
 - 나.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법
3. 그 밖에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

②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부기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2. 서민 등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2) **제9조의6(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시·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광고나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법대부행위등”이라 한다)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발견 또는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등은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한 광고를 발견한 경우 광고를 한 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해당 광고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3)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에 따라 한국
대부금융협회⁴⁾는 대부광고의 기준 위반 여부를 해당 금융상품
판매업자들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⁵⁾, 「대부업법 시행령」 제11조

3.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 행위를 한 자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9조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① 대부업등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대부업등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④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 및 투자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이하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협회등”이라 한다),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로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2.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3.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4.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하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서 생략)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각 호 생략)

⑤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할 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협회등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광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의2제4항제3호6)에서는 이미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업무로 “대부업자등의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를 명시하고 있음.

[한국대부금융협회 광고 자율심의 제도 개요]

주요 심의 대상	<사전심의(필수) 대상> 주요 일간지 광고 지상파·케이블·극장 등 영상광고 동영상 형식의 온라인 광고 <사후심의(임의) 대상> 사전심의 대상 외 광고 <변경심의 대상> 심의 적격 광고(심의필 유효기간내)의 일부 내용이 변경된 경우 심의 적격 광고(심의필 유효기간내)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사전심의의 광고물에 대하여 심의받지 않고 광고를 게시하거나, 승인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의 신청 절차	① 사전 점검: 각사별 감사(또는 보호감시인)로부터 사전 확인 ② 심의 신청: 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광고시안 제출 ③ 심의 진행: 실무위원 검토 후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④ 결과 통보: 적격 / 조건부 적격 / 부적격으로 심의 결과 통보 ※ 사전심의의 광고물의 경우, 심의 결과 통보 전까지는 광고를 게시·배포할 수 없습니다.

(자료: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 개정안은 현재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운영중인 대부광고 자율심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관련 심의 절차 등을 법률에 세부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대부업자등의 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한 광고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대

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④ 법 제18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3. 대부업자등의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부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긍정적인 취지로 보임.

- 참고로, 현재 업권 관련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 제도를 운영중인 입법례는 다음과 같은바, 금융권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권 및 상호저축은행업권에서 광고 자율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개정안은 대부업 관련 광고 규제를 「의료기기법」의 입법례와 유사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 현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0(광고의 자율심의)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제13조제1항제1호, 제46조제1항제1호·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광고계획신고서와 광고안을 협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광고의 시정이나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매분기별 광고 심의 결과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6(광고의 자율심의) ① 상호저축은행이 예금등, 대출, 후순위채권 등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광고계획신고서와 광고안을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광고의 시정이나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중앙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매분기별 광고 심의 결과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기법」 제25조(광고의 자율심의) ①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광고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중 텔레비전방송 및 라디오방송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문 중 일반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같은 조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잡지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4. 전광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받은 광고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광고에 대해서는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만으로 구성된 광고
 2. 수출만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의료기기의 외국어 광고
 3.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내용과 동일한 외국어 광고
 4. 의료인 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 ④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기구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⑥ 의료기기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⑧ 제7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기기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자율심의기구 구성·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 후 의료기기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 ② 자율심의기구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심의에 적용하는 심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율심의기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심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기기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기기광고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⑤ 제25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자율심의기구의 구성·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 ⑥ 자율심의기구가 제25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심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①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광고(제4조, 제4조의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의를 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2. 「식품위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4.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 ③ 자율심의기구는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표시·광고의 심의를 받은 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광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표시·광고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 등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율심의기구가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율심의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 ⑧ 제1항에 따른 심의 대상, 제2항에 따른 등록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한편, 개정안 심사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먼저, 개정안은 대부광고 시 협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화하면서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 외에 협회 차원의 시정요구 등 조치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심의는 거쳤으나 해당 심의결과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조치 또는 제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광고 자율심의 제도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협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심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협회에 시정요구권 등 일정한 조치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한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자율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금융당국이 허위·과장광고 등과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타 법령⁷⁾과 비교 시 과도하며, 대신 자율심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협회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심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광고에 대한 시정요구권 등 조치권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한바, 광고 자율심의 위반(미심의 또는 심의결과

7)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각 소관협회에 대해 광고 자율심의 권한을 부여하고 협회가 광고의 시정·중단요구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협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금융당국이 제재를 하는 근거는 두지 않음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는 법 체계적 정합성 및 자율심의 제도의 실효성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개정안은 「의료기기법」의 입법례와 유사하게 광고 자율심의가 적용되는 광고매체를 안 제9조의4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해당 매체들은 광고 관련 일반법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와 그 범위가 상이하고, 현행 「대부업법」에서도⁸⁾ 이미 대부조건 관련 광고 규제 시 규제대상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로 정하고 있음.

[자율심의 적용 대상 광고매체 비교]

개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중 텔레비전방송 및 라디오방송	-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문 중 일반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같은 조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잡지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②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전단·팸플릿·건본 또는 입장권 2. 인터넷 또는 PC통신 3. 포스터·간판·네온사인·에드빌론 또는 전광판 4.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5.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4. 전광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 「의료기기법 시행령」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라디오’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6.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 「의료기기법 시행령」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	

는 광고매체	
--------	--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자율심의 대상 광고매체 역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로 일원화하는 것이 법체계상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문 의 처
02)6788-5108